

	학 칙	규정번호	2-0-01
		제정일자	1992. 3. 1
		개정일자	2021.02.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경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필요한 창의인성을 갖춘 산학일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문개정 2018.3.1.]

제2조의2(인재상) 본 대학교의 인재상은 현장전문 실천인재, 창의융합 실력인재, 도덕가치 봉사인재이다.

[본조신설 2018.3.1.]

제3조(명칭) 본 대학교는 경민대학교라 한다.

제4조(위치) 본 대학교는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가능동)에 둔다. (개정 2016.3.1.)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교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별도 입학하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학과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학과의 재적생이 다른 학과로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의한 학과신설, 학과통합, 학과폐지, 정원조정 및 이에 따른 교원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3.1.]

제5조의2(교육조직) ① 본 대학교에 전문기술분야의 고숙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를 설치·운영한다.

② 마이스터대의 교육과정은 단기직무과정, 전문학사과정,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으로 운영한다.

③ 마이스터대의 학칙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2.25.]

제 2 장 직 제

제6조(교직원) ① 본 대학교에는 총장, 부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의 교원과 직원 및 조교를 둔다. (개정 2019.8.1.)

② 총장은 강의전담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등을 각각 임용제청 또는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단, 국고재정사업 관련 교원의 경우 처우 및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총장의 결재 후 임용제청 또는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1., 2021.2.25.)

[전문개정 2018.3.1.]

제6조2(강사)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8.1.]

제7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18.3.1.]

제8조(직제) 본 대학교는 학사행정을 위한 본부 조직과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3.1.]

제8조의2(산학협력단의 설치) ① 본 대학교에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18.3.1.)

② 산학협력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9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부터 4년으로 한다.

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이하 “전공심화과정”이라 한다)은 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하여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3.1.]

제10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재외국민 및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의 재학연한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할 수 있다.

제 4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1조(학년도) 학년도는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12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1년 2학기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1.)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로 한다.

2.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3. 학기개강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후에 할 수 있다.

4. 각 학기는 집중수업을 위한 모듈식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모듈식 수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제 또는 계절학기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3.1., 2018.3.1.)

③ 감염병에 따른 위기단계 발생시와 국가적 재난 등 대학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3.1.)

④ 제1항의 학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3학기 이상의 다학기제 또는 학위과정별로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8.31.)

제13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채플수업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2.1.)

제14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법정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

② 하계방학·동계방학 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수업 등을 과할 수 있다.

제15조(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1., 2018.3.1.)

제 5 장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 및 전과

제16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3.1.)

제17조(입학자격) ①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15.9.1., 2018.3.1., 2019.2.1.)

②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신설 2018.3.1.)

제17조의2 삭제 <2018.3.1.>

제18조(입학전형) ①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 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9.2.1.)

② 전공심화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 학년도 전문대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시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8.3.1.]

제18조의2(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1.]

제19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매 학년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교무위원과 각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3.1.)

③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전형 관리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며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입학허가 및 등록) 입학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납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3.1. 2018.3.1.)

제22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3.1.)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
2.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3.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입학지원 방법을 위반한 자
4. 기타 입학모집요강 등에서 총장이 정한 입학취소요건 해당자

제23조(산업체위탁교육) ① 총장은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위탁교육장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또는 대학 1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자는 편입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며, 편입학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3.1.]

제25조(전과) ① 전과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개시일 이전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한다. 다만,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로의 전과와 전공심화과정 입학자 및 산업체위탁 교육생의 전과는 불허한다.

② 전과는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과한 자의 기 취득학점은 전입학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3.1.]

제26조(재입학) ①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동일학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과로 인한 재입학은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를 신청 받아 심의 후 허가할 수 있다.

③ 산업체위탁교육생 제적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학년 산업체위탁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3.1.]

제 6 장 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제27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임신, 출산, 육아,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은 군 휴학, 일반휴학, 질병휴학으로 구분한다.

③ 휴학은 1년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군 휴학은 최대 3년(6학기), 창업휴학은 최대 2년(4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다.

④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⑤ 군 장기복무로 인한 휴학은 군 휴학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군 휴학자가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수시시험 또는 중간시험을 실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⑥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일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3.1.]

제28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18.3.1.)

② 복학은 학기개시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3.1.)

③ 학기개시 후 수업일수 1/4선 이후에 제대하는 군 휴학자의 경우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등의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동일 학기에 휴학원을 제출한 후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휴학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휴학 자는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복학 예정일에 복학할 수 있다.

⑥ 2년제 학과로 입학한 휴학 자 중 복학 시 소속 학과가 3년제로 개편되었을 경우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3년제로 편제할 수 있다.

⑦ 3년제 학과로 입학한 휴학 자 중 복학 시 소속 학과가 4년제로 개편되었을 경우 해당연도의 학제에 따른다. (신설 2016.3.1.)

제29조(자퇴)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30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3.1.)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가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학기개시 후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4. 삭제 <2009.3.1.>
5. 삭제 <2009.3.1.>
6. 기타 관계규정 위반으로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7. 재학기간 중 3회 이상 계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개정 2013.8.26.)

제 7 장 교과 및 수업

제31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과교육과정과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분하며, 교과교육과정은 교양 교과, 전공교과 및 교직교과로 나누며, 교양 및 전공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8.31.)

②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 및 국가자격증과 인증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③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및 대학의 핵심역량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을 개(편)발·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3.1., 2020.8.31.)

④ 선택형 직무 트랙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2.1.)

[전문개정 2018.3.1.]

제31조의2(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① 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나누며, 학점 배점기준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에서 모집단위별 전공심화과정의 특성에 따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부의 인가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개정 2014.3.1., 2018.3.1.)

② 삭제 <2009.3.1.>

③ 삭제 <2009.3.1.>

제31조의3(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두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3.1.]

제31조의4(창업친화적 학사제도에 의한 교육과정운영) ① 총장은 학생의 창업기회 활성화와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에 의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9.1.]

제31조의5(연계교육과정 운영) ① 총장은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계고등학교, 산업대학, 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1., 2018.3.1.)

② 연계교육으로 이수한 과정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일정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연계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9.1.]

[제목개정 2018.3.1.]

제31조의6(계약학과)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과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수업료, 학기와 수업일수, 설치·교육기간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3.1.]

제31조의7(융합교육과정운영) ① 대학 내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융합교육과정의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2.25.]

제32조(교과이수단위)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3.1)

② 삭제 <2016.3.1.>

③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개정 2019.2.1..)

④ 계절학기의 이수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3.1., 2018.3.1.)

⑤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3.1.)

⑥ 삭제 <2009.3.1.>

제32조의2(전공심화과정 교과이수단위)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1년제 학과는 20학점, 2년제 학과는 60학점 이상으로 하며, 매 학기 6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2.1..)

③ 삭제 <2018.3.1.>

④ 삭제 <2009.3.1.>

⑤ 삭제 <2009.3.1.>

제33조(학점인정) ①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한 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② 편입학한 학생이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모집단위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재입학생은 허가된 학기의 이전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④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은 학점 이수과정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한 동일 교과목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학점인정에 관한 운영 및 세부 적용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해외인턴십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최대 20학점까지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군복무 중 학점 취득과 관련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3.1, 2014.3.1)

⑧ 성인학습자가 입학 전 정규교육 이외의 영역에서 습득한 직무경험, 학습경험, 직무관련자격증 등을 평가인정을 통하여 관련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⑨ 직장체험 연수를 2개월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⑩ 모집단위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 학점의 1/4 이내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3.1.)

⑪ 학생의 취업 및 창업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신설 2014.6.1.)

⑫ 삭제 <2016.3.1.>

⑬ 실습학기제를 이수한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3.1.)

제34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방송통신수업 및 사이버 수업 포함) 온·오프 혼합방식(블렌디드 러닝, 플립드러닝) 혁신적인 교육방식 등을 도입 할 수 있

으며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3.1., 2014.9.1., 2016.3.1., 2018.3.1., 2020.8.31.)

② 매 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③ 수업시간표는 학기 수업개시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며, 매 교시는 50분으로 한다. 다만, 야간은 45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1.)

④ 삭제 <2009.3.1.>

제34조의2(수업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학칙 제34조(수업)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등에 따른 위기단계 발생시와 국가적재난 등 대응을 위한 수업방식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3.1.)

제35조(집중수업) 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현장실습수업 등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3.1.)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③ <삭제>

제36조(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1.)

제37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한 학기의 수강신청 범위는 12학점 이상 22학점 이내로 하고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전공심화과정은 최저 6학점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 2019.2.1.)

제38조(출석의무)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3.1.]

제39조(출석인정) ① 학생의 질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취업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적용한다.

② 해당 학기 총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경과한 이후 군 휴학자의 잔여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3.1.]

제 8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40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험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3.1.)

②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 실기, 실습, 과제물작성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1.)

③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다만, 재학 중 취업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적용한다. (개정 2016.11.1., 2018.3.1.)

④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따로 과할 수 있다.

⑤ 삭제 <2018.3.1.>

제40조의2(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09.3.1., 2015.9.1., 2018.3.1.)

②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의3(역량기반및사회맞춤형 교육과정 학생 직무수행능력평가) ① 역량기반및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의 직무수행능력 성취도를 높이고 교육과정 운영을 점검하기 위하여 역량기반및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결과에 대한 학생 직무수행능력 성취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0.3.1.)

② 제31조 제3항에 따라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제40조와 별도로 교과목별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3.1.)

[전문개정 2018.3.1.]

제41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 평가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3.1., 2018.3.1.)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⁰ 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P를 급제로 한다. (개정 2016.3.1., 2018.3.1.)

등급	성적	평점
A ⁺	100-95	4.5
A ⁰	94-90	4.0
B ⁺	89-85	3.5
B ⁰	84-80	3.0
C ⁺	79-75	2.5
C ⁰	74-70	2.0
D ⁺	69-65	1.5
D ⁰	64-60	1.0
F	59점 이하	0
P		불계

③ 추가시험 성적은 A⁰ 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1.)

④ 성적 배점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2.1.)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매 학기 수강 제한(2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3.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4.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5.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

[전문개정 2018.3.1.]

제42조의2 삭제 <2016.3.1.>

제43조(학사경고) 성적 평가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3.1.)

제44조(졸업) ① 총장이 정하는 각 학과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별지서식 제1-1호, 별지서식 제1-2호, 별지서식 제1-3호에 의하여 별표 3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5.3.1., 2015.9.1., 2016.3.1. 2018.3.1., 2021.2.25.)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2년제 72학점, 3년제 110학점, 4년제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3.1., 2019.2.1..)

③ 2년제는 교양교과 6학점 이상, 전공교과 50학점 이상, 3년제는 교양교과 10학점 이상, 전공교과 80학점 이상, 4년제는 교양교과 25학점 이상, 전공교과 10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단, 편입, 전과, 재입학, 복학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학년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개정 2015.3.1., 2016.3.1., 2019.2.1..)

④ 졸업에 필요한 학기는 반드시 2년제는 4학기, 3년제는 6학기, 4년제는 8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이수하여야 한다. 단, 계절학기는 학기이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1.)

제44조의2(졸업유보)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수여대상자 중 성적향상 및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학기단위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3.1., 2018.3.1., 2019.2.1..)

[본조신설 2009.3.1.]

제44조의3(후기졸업) 졸업학점 미달자,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1.]

제45조 삭제 <2018.3.1.>

제45조의2(전공심화과정 졸업 및 수료)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32조의2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서식 제2호에 의하여 별표 3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8.3.1.)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5호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2.1..)

1. 1학년 수료 : 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하여 11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

③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45조의3(복수(공동)학위수여) ① 제31조의3에 의거하여 협약에 의한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공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3.1.)

② 복수(공동)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2.1.)

제45조의4(학위수여 취소)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3.1.]

제46조(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4호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 2019.2.1..)

1. 1학년 수료 : 35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72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10학점 이상

4. 4학년 수료 : 130학점 이상

제 9 장 평생교육

제47조 삭제 <2018.3.1.>

제48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 학생외의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삭제 <2008.3.1.>

제49조(전공심화과정) ① 고등교육법 제49조, 제5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2에 의거 전공심화 과정을 별표 2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3.1.]

제50조(시간제 등록) ①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8.3.1.)

②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인원은 입학정원의 10% 범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3.1.)

③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3.1.)

제51조(학점은행제)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대학교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2년제 80학점 이상, 3년제 1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본 대학교에서 2년제 48학점 이상, 3년제 65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본 대학교에서 2년제 36학점 이상, 3년제 4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전문학사 학위수여에 따른 학위종류, 전공, 절차, 요건 및 해당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점은행제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8.31)

⑤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8.31.)

[전문개정 2018.3.1.]

제52조 삭제 <2018.3.1.>

제53조 삭제 <2018.3.1.>

제54조 삭제 <2018.3.1.>

제55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 본 대학교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소정의 특별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6호의 수료증을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5.3.1., 2018.3.1.)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교에서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8.3.1.)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8.3.1.)

제 10 장 학생활동

제56조(학생자치기구) ① 본 대학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학풍을 조성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지도력, 창조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경민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3.1.)

② 본 대학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④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6조의2 삭제 <2018.3.1.>

제57조(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2016.3.1., 2018.3.1.)

제58조(학생활동의 금지) ① 총학생회는 학교운영에 관하여 부당한 간섭 및 자치활동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거부, 마이크를 사용한 고성방가, 불온게시물의 무단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9조(학생단체의 조직)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년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해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이와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3.1.)

③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비정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3.1.)

제61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제62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3조(처벌) ①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8.3.1.)

② 제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 11 장 규율과 상벌

제64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65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6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 학칙을 위반한 자
2.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석한 기간이 4주를 초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일정하지 아니한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든 징계 대상자는 징계심의 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제66조의2(성희롱 예방 및 성차별 금지)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본 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직을 신설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1.]

제 12 장 등록금

제67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에 총장이 정한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는 등록금(입학금을 제외한다)의 납부를 연기 또는 분납할 수 있으며, 이와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3.1.]

제68조(결석 또는 정학시의 등록금) 등록금은 결석,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1.)

[제목개정 2015.3.1.]

제69조(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3.1., 2018.3.1.)

[제목개정 2015.3.1.]

제70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8.3.1.]

70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3.1.)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3 장 장학금

제71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3.1.)

②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휴학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며,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교외장학금은 해당 출연자 및 유치자의 조건에 따른다. (개정 2018.3.1., 2021.2.25.)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1., 2018.3.1.)

제 14 장 교수회 및 제위원회

제72조(교수회) ① 본 대학교에는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보직교원 및 학과장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수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④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2.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3.1.]

제73조(대학평의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3.1.]

제74조(교무위원회) ①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대학운영 및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3.1.)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5조(제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3.1.)

② 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5 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76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3.1.]

제77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3.1.)

제78조 삭제 <2018.3.1.>

제7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심의 및 공포)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학칙 제·개정안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전문개정 2018.3.1.]

제 16 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81조(부속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정보도서관
2. 교목실
3. 예비군대대
4. 신문방송국

②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

1. 평생교육원
2. 경민대학교부설유치원
3. 가구산업개발원

③ 부설 및 부설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3.1.]

제82조(정보도서관) 정보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운영규정에 따른다.

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3.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5.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8.3.1.]

제 17 장 학교기업

제83조(학교기업의 설치)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해 다음 각 호의 학교기업을 설치한다.

1. bakenbaker

2. 더블유비 Want Beauty

② 학교기업은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경민대학교 내에 설치한다. 단, 필요 시 교외에 둘 수 있다.

③ ‘bakenbaker’는 호텔외식조리과와 연계하여 제과 및 음료를 생산·판매를 하며, ‘더블유비 Want Beauty’는 뷰티케어과와 연계하여 향장품 제조·판매를 사업 내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3.1.]

제84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① 학교기업은 학생들의 현장실습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에서 실시한 현장실습에 대한 학점인정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3.1.]

제85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① 학교기업의 운영성과를 결산한 결과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3.1.]

제 18 장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 지원

제86조(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 지원 등) ① 본 대학교에는 장애학생과 소수집단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업수행, 학교생활 적응, 편의시설 등을 지원하는 지원부서(장애학생 지원센터 등)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2.1.)

②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두며, 이와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장애학생이 입학이나 학업수행 등에 있어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고등교육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3.1.]

제 19 장 자체평가

제87조(자체평가)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3.1.]

제88조(교육품질관리) 본 대학교의 역량기반및사회맞춤형의 직업교육 우수성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역량기반및사회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개선을
수행하며,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2.27. ,2020.3.1)

[본조신설 2016.3.1.]

제 20 장 보 칙

제89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

부 칙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동통신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정보통신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경민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경민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
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4조(학과 수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 98학년도에 연극영화과(야간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0학년도부터는
연극영화과(주간과정)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전자계산과에 소속된 재적생이 2000학년도 이후 복학할
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멀티미디어과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되 희망
자가 적정인원을 초과 시에는 성적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
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계산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멀티미디어과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과 재적생으로 본다.

③ 사무자동화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사무정보자동화과 재적생으로 본다.

④ 전산정보처리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인터넷정보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분리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산업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시각디자인과로 전과하고자 할 때에는 기이수한 교과목을 검토하여 시각디자인과로 전과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종전의 사진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미디어사진과 재적생으로 본다.

③ 종전의 만화예술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만화·애니메이션과 재적생으로 본다.

④ 종전의 연극영화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연극과 재적생으로 본다.

⑤ 종전의 식품영양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호텔조리과 재적생으로 본다.

⑥ 다이어트정보과 졸업(예정)생은 교육과정상 영양학전공자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분리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정보통신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디지털정보통신과 2년 및 3년제에 재적생으로 본다.

② 소프트웨어개발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개발과 2년 및 3년제에 재적생으로 본다.

③ 인터넷정보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인터넷정보과 2년 및 3년제에 재적생으로 본다.

④ 사무정보자동화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인터넷비즈니스과 소속으로 본다.

⑤ 건축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건축시스템과 2년 및 3년제에 재적생으로 본다.

⑥ 건축설비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건축환경설비과 2년 및 3년제에 재적생으로 본다.

⑦ 소방안전관리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소방과학과 소속으로 본다.

⑧ 만화애니메이션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디지털만화과 소속으로 본다.

⑨ 다이어트정보관리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다이어트정보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분리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식품영양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할 시는 호텔조리과 재적생으로 보며 교육 과정상 영양사 취득을 위해 영양학 전공자로 본다.

② 건축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건축시스템과 및 건축토털디자인 2년 및 3년제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분리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만화애니메이션과에 소속된 재적생이 2002학년도 이후 복학할 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디지털만화과 또는 컴퓨터애니메이션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만화애니메이션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디지털만화과 또는 컴퓨터애니메이션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개편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종전명칭 소속 교원 및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명칭변경과 소속 교원 및 학생으로 본다.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소프트웨어개발과	소프트웨어정보전공
디지털정보통신과	정보통신전공
인터넷정보과	인터넷정보전공
건축시스템과	실용건축과
건축환경설비과	
소방과학과	소방행정전공
	소방안전시스템전공
호텔조리과	호텔조리전공
외식경영과	외식호텔경영전공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디지털만화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컴퓨터애니메이션과	
인터넷방송과	멀티미디어방송과
멀티미디어과	

부 칙

이 학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분리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소프트웨어정보전공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모바일정보전공 소속으로 본다.

② 종전의 복지행정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본다.

③ 태권도외교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태권도외교 2년 및 3년제에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개편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종전명칭 소속 교원 및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명칭변경과 소속 교원 및 학생으로 본다.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모바일정보전공	IT학부 (미디어컨텐츠전공, 정보통신전공, 인터넷정보전공)
정보통신전공	
인터넷정보전공	
인터넷비즈니스전공	e-비즈니스경영
실용건축과	건축인테리어학부 (건축전공, 실내건축전공)
소방안전시스템전공	소방학부 (소방행정전공, 소방방재전공)
소방행정전공	
사회복지과	복지보육학부 (사회복지, 영유아보육)
관광경영전공	관광호텔학부 (호텔외식경영전공, 여행항공경영전공, 영어관광경영전공, 중국어관광경영전공)
외식호텔경영전공	
연극과	영상공연학부 (연기전공, 뮤지컬전공, 영상연출무대기술전공, 디지털영상미디어전공)
뮤지컬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학과개편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종전명칭 소속 교원 및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명칭변경과 소속 교원 및 학생으로 본다.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소방행정전공	소방행정과
소방방재전공	
뮤지컬전공	뮤지컬연기과
연기전공	
영상연출무대기술전공	
디지털영상미디어전공	디지털영상과

② 만화애니메이션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2년 및 3년제로 선택할 수 있으며, 카툰애니메이션과 소속으로 본다.

제3조(폐과) 미디어사진과의 폐과로 인하여 소속된 재적생이 2009학년도 이후 복학할 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과할 수 있으며, 이는 총장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학과개편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종전명칭 소속 교원 및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명칭변경과 소속 교원 및 학생으로 본다.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건축인테리어학부 (건축전공, 실내건축전공)	건축인테리어학부 (건축전공, 실내건축전공, 건축경영관리전공)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개편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시행 당시 다음표의 종전명칭 소속교원 및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명칭변경과 소속교원 및 학생으로 본다. 단 다이어트정보과와 멀티미디어방송과에 소속된 재적생이 2011학년도 이후 복학할 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과할 수 있으며, 이는 총장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전문학사과정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컴퓨터정보통신학부	정보통신전공
	인터넷정보전공
	미디어콘텐츠전공
건축인테리어학부	건축전공
	실내건축전공
	건축경영관리전공
관광호텔경영학부	영어관광경영전공
	중국어관광경영전공
	호텔외식경영전공
	여행항공경영전공
복지보육학부	사회복지전공
	영유아보육전공
호텔조리과	호텔조리외식과
다이어트정보과	뷰티스킨케어과
산업디자인과	아동미술과
멀티미디어방송과	실용음악과

2.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호텔조리학과	호텔조리외식학과

② 컴퓨터정보통신학부, 건축인테리어학부, 관광호텔경영학부, 복지보육학부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학년도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현소속 학부에서 파생된 학과로 선택할 수 있다.

제3조(학과통합) 산업디자인과를 아동미술과 통합운영 인하여 소속된 재적생이 2011학년도 이후 복학할 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과할 수 있으며, 이는 총장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폐과) 미디어컨텐츠전공의 폐과로 인하여 소속된 재적생이 2011학년도 이후 복학할 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과할 수 있으며, 이는 총장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개편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종전명칭 소속 교원 및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명칭변경과 소속 교원 및 학생으로 본다.

1. 전문학사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부동산경영과	세무회계과
생활체육과	레저스포츠과

2. 학사학위과정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부동산경영학과	(폐과)
생활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과
컴퓨터정보통신학과	(폐과)
건축공학과	(폐과)
e-비즈니스경영학과(산업체경력있는과정)	(폐과)
(신설)	e-비즈니스경영학과(산업체경력없는과정)
(신설)	아동보육학과

② 전문학사과정 부동산경영과, 생활체육과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생활체육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현 소속 학과에서 파생된 학과로 선택할 수 있다.

제3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경민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본 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4조(폐과) 컴퓨터정보통신학과 부동산경영학과 폐과로 인하여 재적생이 2012학년도 이후 복학할 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과할 수 있으면 이는 총장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개편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종전명칭 소속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명칭변경과 소속 학생으로 본다. 다만, 계열 및 과명 변경에 따른 교원의 소속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보나 전공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전문학사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건축인테리어과	디지털건축인테리어과
소방행정과	소방안전관리과
카툰애니메이션과	디지털콘텐츠과
디지털영상과	디지털방송영상과
뷰티스킨케어과	뷰티케어과
독서문화콘텐츠과	아동독서지도과
공공행정과(자치행정전공, 경찰행정전공)	사무비서행정과
레저스포츠과(골프전공, 레저스포츠전공)	관광레저스포츠과
아동미술과	아동미술지도과
시각디자인과	광고홍보제작과

2. 학사학위과정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건축인테리어학과	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학과
카툰애니메이션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독서문화콘텐츠학과	아동독서지도학과
자치행정학과	(폐과)
레저스포츠학과	관광레저스포츠학과
아동미술학과	아동미술지도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광고홍보제작학과

② 전문학사과정 공공행정과(자치행정전공, 경찰행정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6학년도 2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현 소속 학과에서 파생된 학과로 선택할 수 있다.

제3조(교명변경 및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경민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본 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③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학과를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다.

④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는 경우는 3년제 과정으로 재입학 한다.

제4조(학칙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칙에 의해 졸업한 학생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제5조(폐과) 공공행정과(자치행정전공, 경찰행정전공)의 폐과로 인하여 재적생이 2015학년도 이후 복학 할 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과할 수 있으며 이는 총장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과 학사학위과정 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 간호과 3년제 재적생에 대하여는 입학 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는다. 다만, 휴학자 중 복학 시 소속 학과가 4년제로 개편되었을 경우 해당 연도의 학제에 따른다.

1. 전문학사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간호과(3년제)	간호학과(4년제)

2. 학사학위과정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광고홍보제작학과	(폐과)
효충사관학과	(폐과)
(신설)	보건행정학과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개편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종전명칭 소속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명칭변경과 소속 학생으로 본다. 다만, 계열 및 과명 변경에 따른 교원의 소속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보나 전공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전문학사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디지털건축인테리어과	공간디자인과

인터넷정보과	융합소프트웨어과
디지털콘텐츠과	(폐과)
디지털방송영상과	영상콘텐츠과
e-비즈니스경영과	IT경영과
아동독서지도과	(폐과)
사무비서행정과	국제비서과
항공서비스과	(폐과)
보건행정과	보건의료행정과
광고홍보제작과	(폐과)
가구인테리어디자인과	(폐과)
관광레저스포츠과	레포츠·태권도과
태권도외교과	(폐과)
실용음악과	공연예술과
뮤지컬연기과	(폐과)
(신설)	게임콘텐츠과
(신설)	호텔외식서비스과

2. 학사학위과정

종전명칭	변경명칭
가구인테리어디자인학과	(폐과)
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과	공간디자인학과
인터넷정보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과
e-비즈니스경영학과	IT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보건의료행정학과
관광레저스포츠학과	레포츠·태권도학과
실용음악학과	공연예술학과

- ② 종전의 디지털콘텐츠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영상콘텐츠과 재적생으로 본다.
- ③ 종전의 아동독서지도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아동미술지도과 재적생으로 본다.
- ④ 종전의 항공서비스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국제비서과 재적생으로 본다.
- ⑤ 종전의 광고홍보제작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영상콘텐츠과 재적생으로 본다.
- ⑥ 종전의 가구인테리어디자인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공간디자인과 재적생으로 본다.
- ⑦ 종전의 태권도외교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레포츠·태권도과 재적생으로 본다.
- ⑧ 종전의 뮤지컬연기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공연예술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학칙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칙에 의해 졸업한 학생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개편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계열 변경에 따른 교원의 소속

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보나 전공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종전의 디지털콘텐츠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게임콘텐츠과 재적생으로 본다.

③ 종전의 아동독서지도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아동보육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학칙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칙에 의해 졸업한 학생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이수학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32조의2, 제37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의2 및 제46조의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 신입생(1학년 복학생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중인 시간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간강사로 이미 임용된 자는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8월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5.3.1., 2015.9.1., 2016.3.1., 2017.2.27., 2018.3.1., 2020.8.31.,)

전문학사·학사, 학과 및 입학정원

계열	학과	수업연한	입학정원
인문·사회	세무회계과	2	60
	유아교육과	3	32
	국제비서과	2	60
	사회복지과	2	70
	아동보육과	2	60
	효충사관과	2	60
	보건의료행정과	2	80
	호텔관광경영과	2	70
	아동미술지도과	3	60
자연과학	호텔외식조리과	2	90
	뷰티케어과	2	60
	호텔외식서비스과	2	60
	간호학과	4	88
공학	공간디자인과	3	90
	건축과	2	60
	융합소프트웨어과	3	70
	정보통신과	3	70
	소방안전관리과	2	90
	영상콘텐츠과	2	60
	IT경영과	2	60
	게임콘텐츠과	3	60
예·체능	공연예술과	2	60
	레포츠·태권도과	2	90
합계			1,560

〔별표 2〕(개정 2015.3.1., 2015.9.1., 2016.3.1., 2017.2.27., 2018.3.1., 2019.2.1., 2020.3.1., 2021.2.25.)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구분	학과	수업연한	입학정원		
			주간	야간	계
산업체 경력 없는 과정	공간디자인학과	1	18		18
	융합소프트웨어학과	1	16		16
	정보통신학과	1	20		20
	소방안전관리학과	2		20	20
	IT경영학과	2		15	15
	보건의료행정학과	2	20		20
	호텔외식조리학과	2		15	15
	아동미술지도학과	1	24		24
	아동보육학과	2		15	15
	유아교육학과	1		20	20
	사회복지학과	2		20	20
	세무회계학과	2		12	12
	효충사관학과	2		17	17
	레포츠학과	2		15	15
	태권도학과	2		35	35
	실용음악학과	2	15		15
	뮤지컬연기학과	2	15		15
합계			128	184	312

〔별표 3〕 (신설 2015.9.1., 2016.3.1., 2017.2.27., 2018.3.1., 2019.2.1., 2021.2.25.)

학위 중별

구분	종별	해당학과
전문 학사	공업전문학사	공간디자인과, 건축과, 융합소프트웨어과, 정보통신과, 소방안전관리과, 게임콘텐츠과, 영상콘텐츠과, IT경영과
	가정전문학사	호텔외식조리과
	미용전문학사	뷰티케어과
	세무회계전문학사	세무회계과
	교육전문학사	유아교육과
	호텔관광전문학사	호텔관광경영과
	호텔외식전문학사	호텔외식서비스과
	행정전문학사	효충사관과, 국제비서과
	보건전문학사	보건의료행정과
	보건전문학사 (보건의료정보관리)	
	사회복지전문학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전문학사	아동보육과
	미술교육전문학사	아동미술지도과
	체육전문학사	레포츠·태권도과
	예술전문학사	공연예술과
학사	간호학사	간호학과
학사 학위 전공 심화 과정	공학사	공간디자인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과, 정보통신학과, 소방안전관리학과, IT경영학과
	가정학사	호텔외식조리학과
	교육학사	유아교육학과
	아동보육학사	아동보육학과
	보건학사	보건의료행정학과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과
	미술교육학사	아동미술지도학과
	체육학사	레포츠학과
	태권도학사	태권도학과
	공연예술학사	실용음악학과, 뮤지컬연기학과
	경영학사	세무회계학과
	군사학사	효충사관학과

[별지서식 제1-1호]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년○○월○○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학과, 전문학사명 : ○○학과, ○○전문학사

년 월 일

경 민 대 학 교 총 장

학위번호 : 경민대학교20○○-○○○○

[별지서식 제1-2호]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년○○월○○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학과, 학위명 : ○○학과, ○○학사

년 월 일

경 민 대 학 교 총 장

학위번호 : 경민대학교20○○-○○○○

[별지서식 제1-3호] (신설 2021.2.25.)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년○○월○○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학사
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학과, 전문학사명 : ○○학과, ○○전문학사 (보건의료정보관리)

년 월 일

경 민 대 학 교 총 장

학위번호 : 경민대학교20○○-○○○○

[별지서식 제2호] (개정 2018.3.1.)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년○○월○○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과정인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이수하여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학사학위를
수여함.

학과 및 학위명 : ○○학과, ○○학사

년 월 일

경 민 대 학 교 총 장

학위번호 : 경민대학교-전공심화20○○-○○○○

[별지서식 제3호]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년○○월○○일

위 사람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사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경 민 대 학 교 총 장

학위등록번호 : 경민대학교-학점20○○-○○○○

[별지서식 제4호]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년○○월○○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학과 : 학과, ○○수료

년 월 일

경 민 대 학 교 총 장

수여번호 : 경민대학교20○○-○○○○

[별지서식 제5호]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년○○월○○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학과 : ○○학과, ○○수료

년 월 일

경 민 대 학 교 총 장

수여번호 : 경민대학교-전공심화-20○○-○○○○

[별지서식 제6호]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년○○월○○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특별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학과 : ○○ 학과, ○○수료

년 월 일

경 민 대 학 교 총 장

수여번호 : 경민대학교-특별과정-20○○-○○○○